

# 제 안 설 명 서

[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]

영 주 시

##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240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. .  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
(안 제5조제2항)
- 나. 보육시설의 보고 의무, 관계공무원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등의 검사 규정을 둠 (안 제5조제4항)
- 나.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함(안 제6조 제1호)

### 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# 5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가. 관련법령(발췌) 1부.
- 나. 입법예고 결과 1부.

##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 (위탁운영) ①시장은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, 위탁취소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
④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,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탁 약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기산 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### 【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탁운영) ①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위탁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</li><li>2. 목 적</li><li>3.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</li><li>4.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</li><li>5. 해약에 관한 사항</li><li>6.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</li></ol>	<p>제5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, 위탁취소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</p> <p>④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,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입소순위)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순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</li><li>2. ~5. &lt;생 략&gt;</li></ol>	<p>제6조(입소순위)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순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</li><li>2. ~5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</ol>

## 관 련 법령 (발췌)

### 【영유아보육법】

제7조(보육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·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,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~ ⑤ <생략>

제15조(보육시설의 운영) ①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·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<생략>

제17조(우선입소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.

② <생략>

제29조(보고와 검사) ①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<생략>

## 입법예고결과

- 조례명 :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- 예고방법 :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영주시보 제 319호(2001년 12월 3일)에 게재
- 예고기간 : 2001년 12월 4일 ~ 2001년 12월 24일(20일간)
- 의견제출 : 없음

#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240호
- 의 안 명 :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- 해당부서 :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

### 2. 제안이유

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
(안 제5조제2항)
- 나. 보육시설의 보고 의무, 관계공무원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등의 검사 규정을 둠 (안 제5조제4항)
- 다.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함  
(안 제6조제1호)

### 4. 검토의견

-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의 주요내용은
  - 안 제5조제2항 :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.
  - 안 제5조제3항 :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의무, 위탁취소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토록 함.

- 안 제5조제4항 :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,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제1호 : "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"로 수정함.

○ 본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-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
- 안 제5조제2항 :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- 계약기간 만료후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시 행정의 공정성, 투명성이 저하되고 수탁자의 자유로운 참여가 어려우며
-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·운영조례 및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등 기존 위탁시설조례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안 제5조제2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2002. 1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